

공정위 발표 자동판매기 구매권유시 피해 예방요령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는 지난해 연말 자판기 구매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요령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자판기 구매의 피해유형을 제시하고 어떠한 점들에 대해 주의를 요해야 하는지가 명시가 되었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봤다.



공정거래위원회

□ 자동판매기 구매자 피해 현황 및 유인방법

<구매자 피해현황>

- 자동판매기 판매업계의 전체적인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판매원들의 기만적 방법을 동원한 무리한 판매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바,
 -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판매기 관련 피해 상담건은 1999년 762건, 2000년 851건, 2001년 1,403건, 2002년 1,158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바 있으며 공정위에도 이러한 피해 신고들이 다량 접수되고 있음.

<유인방법>

- 공정위 및 소비자 관련 단체에 접수되는 부당한 거래 유인방법은 대체로 아래와 같음.
 - "자판기는 무료로 설치해 줄테니 하루에 5천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은 갖는 대신 관리만 해달라"고 하여 마치 렌탈(임대)계약방식인 것처럼 매매계약을 오인케 함(실제로는 매매계약).
 - 사진 시장조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저희가 사장님 가게 주변을 시장 조사한 결과 하루 커피 50잔만 놓고 계산을 하더라도 연간 약 540만원의 순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수익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
 - "이것저것 빼더라도 월 10만원 정도의 수익은 된다. 만약 예상수익이 나오지 않을 시에는 자판기는 우리가 가져가고 대금은 안내도 된다"고 하여 마치 언제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유도.
 - 판매원들이 유명 대기업의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대기업이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케 함.

□ 구매자 피해예방 요령

◦ 계약서 교부 요구 및 기재사항에 대한 검토

- 자동판매기 구매계약 체결시 판매업자 또는 판매원에게 반드시 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하며,
- 교부받은 계약서에는 ①판매업자 등에 대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판매하는 재화등의 명칭, 종류, 내용 ③재화 등의 거래방법, 거래기간, 시기 ④예상수익율 또는 금액 ⑤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 행사에 필요한 서식 ⑥소비자 피해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⑦거래에 관한 약관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함.

◦ 확인서 교부 요구

- 자동판매기의 경우 한번 판매되어 사용된 것은 중고 자판기로 인식되어 그 시장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위가 보급한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에서도 계약 해지시 그 기간에 따라 할부 판매가격 대비 최소 30% 내지 최대 80%의 사용손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상기 유인 방법에서와 같이 판매원이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사용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음.
- 이처럼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판매원의 정보제공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판매원의 말이나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매원에게 동사항에 대한 확인서 교부를 요구하여 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함.

◦ 인감도장 등의 요구시 불응 및 확인서 징구

- 구매자에게 자동판매기 과순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의 명목으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후 실제로는 판매자가 할부 금융사와 구매자 명의의 할부 판매 계약을 대신하여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판매원이 인감도장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가능한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서를 판매원으로부터 받아 두어야 함.

◦ 혼잡한 시간은 피함.

- 판매원들은 구매자가 제대로 계약서 등을 검토할 시간이 없는 고객들이 많은 시간대를 노려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자는 구매의도가 있더라도 동 시간대에는 계약서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바람직함.